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이용계약 관한 사항

제1조(이용 계약)

①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항목별 비용

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 24호서식)를 발급한다.
이용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제공 ▶ 사후관리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100%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 안내 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방법 및 절차
수가 변경 시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계약 기간이 만료전일 경우는 안내문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월 한도액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약과 같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안내문으로 통보한다.
등급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계약이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자격(본인 부담률)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변경된 자격 (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
급여제공 시간, 횟수, 급여내용 변경 시	‘갑’ 과 ‘을’ 이 유선으로 상호협의 하여 변경하고 급여변경 사유를 급여계획변경 사유서나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등에 작성한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며 서비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 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정서 지원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2026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비용의 부담)

그 해의 정한 수가 및 본인부담율에 의한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서비스 시간	방문요양 수가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비고
일반대상자	15%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 가능
경감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6%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본 기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목욕 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한다.

(비용의 부담)

〈 2026년 방문목욕 수가표 〉

서비스 횟수	방문 목욕	비고
입욕(60이상)	50,100	가산 수가는 없음
입욕(40분이상 60분미만)	40,080	
입욕(60분이상 1인 몸씻기)	40,080	
입욕(40분이상 60분미만 1인몸씻기)	35,070	

〈 방문목욕 본인 부담률 〉

구분	본인 부담율	비고
일반대상자	15%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 가능
경감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6%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9%	
기초생활수급자	0%	